

LHCS 41 85 02 : 2020

분별해체 공사

2020년 00월 00일 제정

<http://www.kosc.re.kr>



LH 전문시방서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LH 전문시방서(LHCS ; LH Construction Specification)」는 국가건설기준(KCS ; Korea Construction Specification)을 기본으로 작성한 종합적인 시방기준으로서, 단위공사 설계 시 해당 공사의 특성과 여건 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전문시방서이므로 관계법상 구속력과 계약도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시방기준 발간 시점에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시방 기준으로 공사시방서 작성 시 반드시 최신 시방기준 등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시방서 제·개정 연혁

- 이 시방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LH 전문시방서와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LH 전문시방서를 중심으로 KCS 내용 및 체계에 맞게 통합 정비하여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전문시방서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LH 전문시방서	• LH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12.6)
LHCS 41 85 02 : 2020	•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00)

제 정 : 2020년 00월 0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련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1
1.5 제출물	1
2. 자재	1
3. 시공	2
3.1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2
3.2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2
3.3 분별해체공사	2
3.4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2
3.5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2
3.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2
3.7 안전관리대책	2
3.8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2
3.9 제거공사 공통사항	2
3.10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2
3.11 위생설비의 설치 등	2
3.12 석면 농도기준의 준수	2
3.13 석면함유 폐기물의 보관	3
부록	4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정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를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공사는 KCS 41 85 01를 따른다.
- (3)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10 05 배출물 관리
- LH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 석면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7. 폐석면)을 말하는 것.

1.4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 (1) KCS 41 85 02(1.2)를 따른다.

1.5 배출물

-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 (1) 석면함유 물질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1) KCS 41 85 02(3.1)을 따른다.

3.2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1) KCS 41 85 02(3.2)를 따른다.

3.3 분별해체공사

(1) KCS 41 85 02(3.3)을 따른다.

3.4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KCS 41 85 02(3.4)를 따른다.

3.5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KCS 41 85 02(3.5)를 따른다.

3.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1) KCS 41 85 02(3.6)을 따른다.

3.7 안전관리대책

(1) KCS 41 85 02(3.7)을 따른다.

3.8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1) KCS 41 85 02(3.8)을 따른다.

3.9 제거공사 공통사항

(1) KCS 41 85 02(3.9)를 따른다.

3.10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1) KCS 41 85 02(3.10)을 따른다.

3.11 위생설비의 설치 등

-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경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수급인은 보관 중인 개인보호구를 폐기하거나 세척하는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석면 농도기준의 준수

-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농도는 1 m² 중 0.01개 이하가 되어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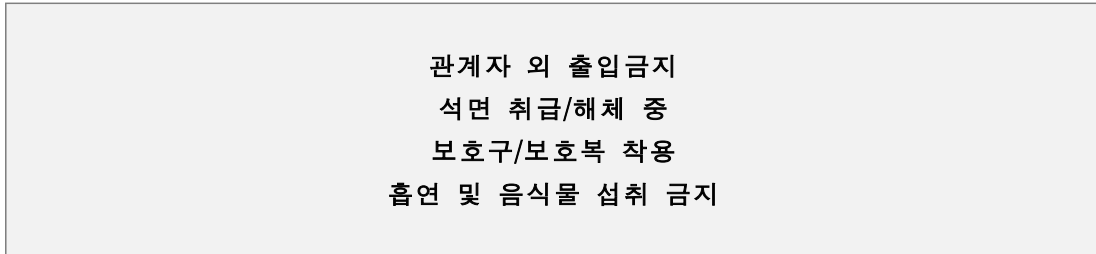
- (2)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급인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3.13 석면함유 폐기물의 보관

- (1) 수급인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록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비고

1. 표지의 크기는 가로 0.7 m, 세로 0.5 m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0.08 m, 세로 0.1 m 이상
3.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0.06 m, 세로 0.06 m 이상
4.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붉은색

집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서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준호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조병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문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영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선욱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영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종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종혁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학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찬교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우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방성윤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인석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기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갑득	(주)포스코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봉주	공주대학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수	부산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정수	충남대학교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민석	(주)건축사사무소더블유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소병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승섭	(주)우진도장건설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이용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성명	소속
박지훈	인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안은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관부처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영훈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분야별 가나다순)

LHCS 41 85 02 : 2020
분별해체 공사

2020년 00월 00일 발행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련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1600-1004(대표)
<https://www.lh.or.kr/>

작성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1600-1004(대표)
<https://www.lh.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http://www.kcsc.re.kr>